

의안번호	2214988
의 퇴 인	진종오의원
회 답 일	2026. 1. 26.
추계번호	25C677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 기준 마련 및 인건비 지급 실태조사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원, 2030년 2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 3,000만원(연평균 1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경력별임금표 기준 마련 (안 제9조의제1항)	-	130	-	-	-	130	26
인건비 지급 실태조사 (안 제9조의제2제3항)	200	-	-	200	-	400	80
합계	200	130	-	200	-	530	1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적정 임금표(이하 “경력별임금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력별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9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안 제9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경력별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첫 실태조사는 법 시행이 예상되는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년마다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 제6조에 따른 체육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2024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첫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경력별임금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임금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8년에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임금표 기준 마련과 유사한 사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공무원 근로자

직무 분석 및 임금체계 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2025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2] 안 제9조의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경력별임금표 기준 마련 (안 제9조의2제1항)	-	130	-	-	-	130
인건비 지급 실태조사 (안 제9조의2제3항)	200	-	-	200	-	400
합계	200	130	-	200	-	5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